

비행교육원 규정



한국항공대학교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1987. 1. 30.		16	2016.1. 12.	
2	1992. 7. 1.		17		
3	1996. 7. .		18		
4	1996. 11. .		19		
5	1997. 2. .		20		
6	1998. 11. 24.		21		
7	1999. 9. 1.		22		
8	2000. 4. 1.		23		
9	2004. 9. 1.		24		
10	2004. 11. 1.		25		
11	2005. 11. 1.		26		
12	2006. 7. 1.		27		
13	2010. 4. 14.		28		
14	2013. 11. 1.		29		
15	2013. 12. 5.		30		

비행교육원규정

제1조(목적) 비행교육원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정관 제96조 및 항공법 제29조의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지정전문교육기관으로서 항공분야의 조종사 양성에 필요한 비행교육을 실시하여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군, 민항공 조종사 인력 수급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0.4.14.><개정 2013.12.5.>

제2조(명칭) 비행교육원은 한국항공대학교 부속 비행교육원(이하 '교육원'이라 한다)이라 한다.<개정2013.12.5.>

제3조(위치) 교육원은 한국항공대학교 내에 둔다. 단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국내외에 산하(또는 별도) 훈련원을 둘 수 있다.

제4조(조직) ① 교육원에는 기획총괄팀, 수색비행훈련원과 정석비행훈련원, 울진비행훈련원을 두며, 수색비행훈련원에는 비행교육팀, 정비팀을 두고 정석비행훈련원에는 비행교육팀, 정비팀, 교육지원팀을, 울진비행훈련원에 비행교육팀, 정비팀, 교육지원팀을 둔다.<개정 2010.4.14., 2013.11.1., 2016. 1. 12.>

② 교관은 전임교원, 조종실기교수, 학과교육 및 비행교육(항공기, 모의비행훈련장치)을 담당하는 일반직으로 구성한다. 단, 필요에 따라 계약제 조종실기교수 및 계약제 일반직을 둘 수 있다.

③ 해외위탁프로그램 운영 감독을 위하여 파견감독관을 둘 수 있다.

④ 교육원의 조직표는 <별표 1>과 같다

제5조(원장 및 부원장) ① 원장 및 부원장은 부교수(조종실기 부교수) 이상의 교원 또는 비행교육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보하되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. 단,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② 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고 그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. <개정 2013.11.1., 2016. 1. 12.>

③ 정석비행훈련원과 울진비행훈련원은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, 각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, 담당 비행훈련원 운영에 관한 업무전반을 총괄한다.<개정 2010.4.14.>

제6조 (교관의 자격 및 교육) ①본 교육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의 자격 및 경력기준은 본교 관련 규정 또는 항공법 등에서 정한 자격에 부합하는 자로 한다.

② 최초로 임용되는 교관은 임용교육을 받아야 하며,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

한다. 단, 최초 임용자에 대한 정기보수교육은 임용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- ③ 기타 세부적인 교관의 자격요건과 임용교육 및 보수교육 등 세부적인 교관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운영세칙에 따른다.

제7조(운영위원회) ①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- ② 위원장은 원장이 당연직으로 하고, 위원은 교무처장, 기획처장, 연구협력처장, 사무처장, 항공운항학과장, 부원장, 비행교육팀장, 정비팀장, 관제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, 항공운항학과교수 1명 및 조종실기교수 1명을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하며, 간사는 기획총괄팀장으로 한다.<개정 2013.11.1., 2016. 1. 12.>
- ③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. <개정 2013.11.1.>

제8조(운영위원회 임무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1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
2. 본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
3. 기타 중요한 사항

제9조(기타 위원회) ① 원장은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교육평가위원회, 선발위원회, 신체검사판정위원회, 안전/표준화위원회 등을 운영할 수 있다.

- ② 교육운영과 관련한 위원회의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운영세칙에 따른다.
- ③ 교육운영세칙 등 하위 제반 규정의 제·개정은 해당 위원회에서 한다.

제10조(교육과정) ① 다음 각호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, 각호의 교육과정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.<개정 2010.4.14>

1. 자가용조종사과정
2. 사업용조종사과정
3. 계기비행증명과정
4. 조종교육증명과정
5. 조종사형식한정추가과정
6. 조종사등급한정추가과정

- ② 상기 교육과정 외에 기초학과프로그램, 해외위탁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.

제11조(선발 및 입과) ① 연간 교육계획에 의거하여 각 과정별로 선발하며, 입과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규정 및 교육운영세칙에 따른다.

- ② 총장이 입과를 허가하고 입과 허가를 받은 자는 소정의 과정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- ③ 과정별 수업기간(학기별)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해당기일 만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 단, 교육원 사정으로 인하여 연장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- ④ 각 과정별 등록금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⑤ 교육과정에 따라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 항공운항학과외의 학생은 항공운항학과로 전과하여야 한다.

제12조(교육운영) ① 교육운영은 각 과정별로 편성하되, 그 내용은 항공법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에 의거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. 단, 본 대학교 재학생의 교과와 수업은 한국항공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준용한다.

- ② 각 과정별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은 교육규정과 교육운영세칙에 따른다.

제13조(평가) ① 평가는 일반적으로 비행교육평가와 학과교육평가로 구분하며, 각 과정의 단계별로 실시한다.

- ② 필요시 각 과정별로 생활태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③ 평가기준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운영세칙에 따른다.

제14조(수료) 각 과정별 평가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수료를 인정한다.

제15조(훈련생의무 및 징계) ① 본 교육원에 입과한 훈련생은 훈련생으로서의 생활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 학칙 또는 교육원 제규정에 명시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② 훈련생이 준수하여야 할 제반사항 및 징계사항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.

제16조(사업) 교육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1의 사업을 한다.

1. 한국항공대학교 재학생의 조종실기교육
2. 정부 및 관련기관의 위탁 비행교육
3. 기타 비행교육 및 관련 분야

제17조(재정) 교육원의 재정은 입과한 훈련생이 납부한 납입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

제18조(회계) 교육원의 회계년도는 한국항공대학교 회계년도에 따르며, 회계관리는 대학본부 또는 산학협력단에서 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 이외의 교육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.
2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86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3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87년 1월 30일 부터 시행한다.
4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92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-
5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96년 7월 일 부터 시행한다.
 6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96년 11월 일 부터 시행한다.
 7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97년 2월 일 부터 시행한다.
 8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11월 24일 부터 시행한다.
 9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 10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 11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 12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 13. 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② (규정의 폐기)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비행교육원 규정 시행세칙은 폐기한다.
 14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15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 16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17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 18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<별표> 조직 및 편제 <개정 2010.04.14., 2016. 1. 12.>

